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비위 정도에 맞는 징계 양정, 성비위 등 중대 비위에 대해 징계위원회 논의 시 구체적 비위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교육공무원 징계제도 운영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징계 참작사유 조정(안 제15조)

현행 징계위원회 의결 시 징계 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 등 요구 내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징계는 비위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경우를 줄이고자 징계 참작사유에서 ‘평소 행실, 근무 성적’을 삭제하고, ‘직급, 비위행위가 교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나. 포상 감경 제한 강화(별지 제2호 서식)

징계의결 요구 시 포상으로 감경대상이 되지 않는 비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확인서에 포상 감경 제한 대상 비위 확대 사항 반영

다. 중징계 사건 징계의결 요구기관 참석 의무화(안 제9조제4항)

징계 심의 시 혐의자의 출석과 진술권은 보장하고 있으나, 징계의결 요구 기관의 출석은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징계요구 기관의 진술 없이 징계 심의·의결이 이루어져 실제적 혐의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음. 이에 중징계 요구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기관의 출석을 원칙적으로 의무화 하도록 함

라. 성비위 사건 징계위원 성별 고려 의무화(안 제4조제6항)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징계심의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일반징계위원회 회의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1/3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

마. 성희롱 정의 변경(안 제7조제1항)

성희롱 정의 규정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로 변경하여 징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바. 영상회의 운영 등 근거 규정 신설(안 제10조제6항 등)

부득이한 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영상회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할 이송, 의결기한 연장과 같이 경미하거나 반복적인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사건이 속한 회의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을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9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징계 등 요구사건의 경우 징계의결등 요구자 및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제10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 및 징계등 사건 당사자(징계등 혐의자, 대리인, 징계의결등 요구자, 감사원, 증인, 피해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및 징계등 사건 당사자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제2조제5항에 따른 징계위원회 관할 이송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의 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⑧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영상회의 및 서면의결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징계령」 제12조제8항을 준용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징계위원회의 회의 시 소지품 제한 및 금지행위) ① 징계등 사건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한 채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녹음기 등 녹음이 가능한 기기류, 휴대전화, 기타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
2. 흉기 등 위험한 물건

② 징계등 사건 당사자는 회의에 참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려는 행위

제15조 중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를 “혐의 당시 직급”으로, “그”를 “비위행위가 교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제4조제1항에 따라 특정 성별의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할 때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특정 성별의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① ~ ⑤ (생략)	제4조(구성) ① ~ ⑤ (헌법과 같음)
⑥ 일반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 각 호(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단서 신설>	⑥ ----- -----. ----- ----- ----- ----- <u>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사건이 속한 회의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u>
제7조(징계등 의결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u>「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u>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 관련 비위만을 징계등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제7조(징계등 의결의 기한) ①--- -----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 ----- -----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생략)

제9조(심문과 진술권) ① ~ ③
(생략)

④징계등 의결 요구자 및 징계
등 의결 요구의 신청자는 징계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⑤ · ⑥ (생략)

제10조(징계등 의결) ① ~ ⑤ (생략)

<신 설>

[illegible]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심문과 진술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다만, 징계 등 요구사건의 경우 징계의결등 요구자 및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징계등 의결) ① ~ ⑤ (현
행과 같음)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및 징계등 사건 당사자(징계등 협의자, 대리인, 징계의결등 요구자, 감사원, 증인, 피해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

<신 설>

<신 설>

<신 설>

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
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및 징
계등 사건 당사자가 동일한 회
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
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제2조제5항에 따른 징계위원
회 관할 이송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등의 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⑧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영상회의 및 서
면의결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제12조제8항을 준용한
다.

제10조의2(징계위원회의 회의 시
소지품 제한 및 금지행위) ①
징계등 사건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한 채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녹음기 등 녹음이 가능한 기
기류, 휴대전화, 기타 징계등

제15조(징계등의 양정)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u>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u>, 징계등 요구의 내용, <u>그</u>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u>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u> 2. <u>흥기 등 위험한 물건</u> ② <u>징계등 사건 당사자는 회의에 참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u> 1. <u>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u> 2. <u>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u> 3. <u>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려는 행위</u> 제15조(징계등의 양정) ----- ----- ----- <u>혐의 당사 직급</u>----- ----- <u>비위행위가 교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u> -----.
--	--